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위촉 동의안

의안 번호	2265
----------	------

제출연월일: 2024. 5. 2.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안이유

- 고충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민권익보호관을 위촉하고자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사항

- 중구형 읍부즈만 추진계획 수립 : 2021. 2. 25.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21. 7. 5.
- 구민권익보호관 공개모집 추진 : 2024. 3. 13.~3. 22. (3명 지원)
- 권익보호관 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 2024. 4. 19.

나.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주요역할(임무)

-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 조례 제3조(기능)에서 정한 사항

라. 구민권익보호관 후보자

성명	사진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고
김잠출		1959.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중구 종갓집 정책자문단 위원 ○ 前 울산mbc 편성국장·보도국장('85.5.~'11.3.) ○ 前 울산신문 편집국장('11.5.~'14.6.) 	
장준익		1964. 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前 중구 안전총괄과장('22.8.~'22.12.) ○ 前 중구 복지환경국장('23.1.~'23.6.) 	
이도윤		1970. 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 (주)다담건축사사무소 대표 ○ 現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 前 중구·동구 민원상담사('21.~'23.) 	

3. 근거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붙임 **근거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2. 권익보호관이 직접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권익보호관에게 의뢰하는 사안 조사·처리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6. 구청장 및 구의회에 권익보호관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7. 직권조사 시 구청장 및 구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8. 권익보호관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9. 권익보호관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0. 그 밖에 권익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조사·처리

제4조(권익보호관의 구성) ① 권익보호관은 구청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권익보호관은 대표권익보호관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권익보호관은 호선한다.

③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권익보호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권익보호관이 꺾어진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권익보호관을 위촉해야 한다.

③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심신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9조(권익보호관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권익보호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